

고 창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591호 2020. 1. 30.(목)

【조 례】

- 고창군 조례 제2482호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1
- 고창군 조례 제2483호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고창군 조례 제2484호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7
- 고창군 조례 제2485호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고창군 조례 제2486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68호 2020년 상반기 여성회관 강사모집 25
- 고창군 공고 제82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표 29
- 고창군 공고 제83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0
- 고창군 공고 제99호 고창군 농림축수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43
- 고창군 공고 제101호 고창군 농림축수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64
- 고창군 공고 제112호 2020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사업자 모집공고 75
- 고창군 공고 제115호 고창군 북분자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81
- 무장면 공고 제2호 무장면사무소 육아휴직 대체인력(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96

--	--	--	--	--	--	--	--	--	--	--	--

발행 고 창 군(편집 기획예산담당관 ☎ 063-560-2326)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0년 1월 30일

고창군 조례 제 2482 호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교육)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창사랑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0년 1월 30일

고창군 조례 제 2483 호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 재량 1.5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제3조 중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u>에서 위임한 <u>자동차운송사업자</u>에 대한 <u>차고지 설치의무 면제</u>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u>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u>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u>」 및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u>」----- ----- ----- -----.</p>
<p>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u>자동차운송사업자</u>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적용대상) ----- -----.</p>
<p>1. <u>개인택시 운송사업자</u>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u>에 따른 <u>개인택시 운송사업</u>을 영위하는 사업자</p>	<p>1.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u>----- -----</p>
<p>2. <u>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u> :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u>에 따른 <u>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u>을 영위하는 <u>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u>를 소유한 사업자</p>	<p><삭 제></p>
<p>3. <u>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u></p>	<p><삭 제></p>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이호 신설 2012.11.23.]

<신 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사업자(고창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4.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

 -----.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0년 1월 30일

고창군 조례 제 2484 호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4.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망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이하 “무연고 사망자”라 한다)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대상은 고창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주민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 · 민간기관 ·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 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 · 민간기관 ·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대행)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0년 1월 30일

고창군 조례 제 2485 호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향토개발”을 “지역개발”로, “새마을개발위원회”를 “마을가꾸기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3호) 중 “태만히”를 “게을리”로 한다.

-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때
- 4. 마을기금과 각종 보조금 등 유용이 확인될 때
- 5. 마을총회 투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15조제5호 중 “새마을사업”을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새마을 개발위원회”를 “마을가꾸기 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마을가꾸기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어촌계장(이하 “이장 등” 이라 한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제8호 중 “각 부의 대표자” 를 “마을주민 다수” 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회무를 통리” 를 “위원회를 총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 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하부조직) ① ~ ③ (생 략)</p> <p>④ 일선행정예 주민의사를 반영 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u>향토개발</u> 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에 <u>새 마을개발위원회</u>를 둔다.</p> <p>제10조(이장의 교체)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 야 한다.</p> <p>1. · 2.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 만히 한 때[이조 전문개정 86. 4. 10]</p>	<p>제3조(하부조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 <u>지역개발</u>-----</p> <p>----- <u>마을가꾸기</u> -----</p> <p><u>위원회</u>-----.</p> <p>제10조(이장의 교체) -----</p> <p>-----</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u>제7호를 위반하여 선거운동</u> <u>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때</u></p> <p>4. <u>마을기금과 각종 보조금 등</u> <u>유용이 확인될 때</u></p> <p>5. <u>마을총회 투표과정에서 불법</u> <u>행위가 확인될 때</u></p> <p>6. ----- <u>게을리</u> -----</p>

제14조(반장의 위촉) 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 1. (생략)
- 2. 해당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 3. 주민총회의 선출을 거쳐 이장이 추천하는 자

② 제1항의 여건을 갖춘 일반에 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위촉한다.

③ (생략)

제15조(임무) 반장은 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 1. ~ 4. (생략)
-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지원
- 6. ~ 9. (생략)

제4장 새마을 개발위원회

제22조(구성) ① 새마을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장·반장·민방위대장·예비군소대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4-h회장·자연보호회장

제14조(반장의 위촉) ① -----

-----.

- 1. (현행과 같음)
- 2. -----
----- 사람
- 3. -----
----- 사람

② -----
----- 사람이
----- 사람을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임무) -----

-----.

- 1. ~ 4. (현행과 같음)
- 5. 마을가꾸기 사업 -----
- 6. ~ 9. (현행과 같음)

제4장 마을가꾸기 위원회

제22조(구성) ① 마을가꾸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어촌계장(이하 “이장 등”이라 한다)을 당연직 위원

· 영농회장 · 흥농계장 · 산림계장 · 어촌계장 · 새마을금고이사장 · 마을문고회장(이하 “이장 등” 이라 한다)이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 (생략)

③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구성원으로 행정 · 새마을 · 영농 · 정신개발부서를 둔다.

1. 행정부서 : 이장 · 반장 · 민방위대장 · 예비군소대장

2. 새마을부서 : 새마을지도자 · 부녀회장 · 4-H회장 · 자연보호회장

3. 영농부서 : 영농회장 · 흥농계장 · 산림계장 · 어촌계장

4. 정신개발부서 : 새마을금고이사장 · 마을문고회장

④ 이장 · 새마을지도자 · 영농회장 · 새마을금고이사장은 각각 그 소속부서의 대표자가 된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 7. (생략)

으로 하며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24조(기능) -----
-----.

1. ~ 7. (현행과 같음)

<p>8. 그 밖에 이장과 <u>각 부의 대표</u> <u>자</u>가 부의한 사항</p> <p>제2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u>회무</u> <u>를 통리</u>하고 위원회를 대표하 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장이 <u>사고가 있을 때</u>에 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8. ----- <u>마을주민 다수</u>- -----</p> <p>제25조(위원장) ① ----- <u>위원회</u> <u>를 총괄</u>----- -----.</p> <p>② ----- <u>부득이한 사유로 직</u> <u>무를 수행할 수 없</u>----- -----.</p>
--	--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0년 1월 30일

고창군 조례 제 2486 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용품”을 “용품 또는 고창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분만진료비”란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를 이용한 임산부의 분만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제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분만진료비 지원대상자는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제2항 중 “출산용품”을 “출산용품 및 분만진료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 출산장려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와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장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뒷면]

신청인 제출 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성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1.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지원사업(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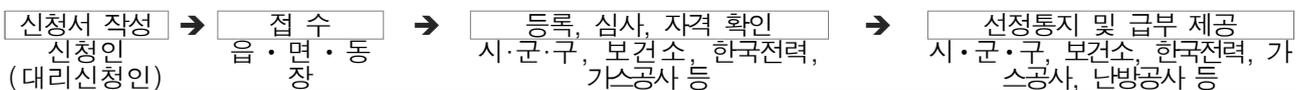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별지 제5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신청서

산모이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번호	
신생아이름	출생일				출산순위
서비스 제공기관명	서비스 유형				
	서비스 기간		<input type="checkbox"/> 단축 <input type="checkbox"/> 표준 <input type="checkbox"/> 연장		
	서비스 이용기간		~ (일)		
본인부담한 총 금액			지원금액		
입금계좌 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p><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p> <p>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거주기간, 거주사실, 출생순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확인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위와 같이 산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산모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p> <p>고창군수 귀하</p>					
첨부서류	<p>1.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1부. 2. 통장사본 1부.</p>				

<p>② ~ ⑥ (생 략) <u><신 설></u></p> <p>제4조(지원내용) ① (생 략)</p> <p>②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u>출산용품</u>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제5조(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 <u>출산장려금의 신청인은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u></p> <p>제6조(지원신청 등) ①·② (생 략)</p> <p>③ <u>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 신고 후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u></p> <p>④ (생 략)</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⑦ <u>분만진료비 지원대상자는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경우에 한한다.</u></p> <p>제4조(지원내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출산용품 및 분만진료비</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 <u>출산장려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와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u></p> <p>제6조(지원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	---

2020년 상반기 여성회관 교육강사 모집공고(안)

여성 친화 도시를 선도하는 고창에서 인적자원 개발과 창업교육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0년 상반기 여성회관 교육 전문 강사를 모십니다.

- 1. 접수기간 : 2020. 1. 20. ~ 1. 23.(4일간)
 ※ 교육기간 : 2020. 3월 ~ 6월 (4개월)
- 2. 접 수 처 : 고창군 여성회관 (☎ 063-560-8085)
- 3. 접수방법 : 직접방문
- 4. 모집인원 : 각 과목당 1명
- 5. 모집과목 : 14개 과목

국가자격증취득과정(6과목)	민간자격증 및 기술기능과정(8과목)
① 한식조리기능사 ② 중식조리기능사 ③ 컴퓨터활용능력 2급 ④ 예쁜 옷 만들기(양장기능사)중급반 ⑤ 예쁜 옷 만들기(양장기능사)초급반 ⑥ 떡제조기능사	① 컴퓨터 기초반 ② SNS를 통한 마케팅기법 및 나만의 상품 홍보하기 ③ 우리 이야기로 그림책 만들기 (그림책활동가양성과정) ④ 손뜨개 고급반(관광상품 만들기) ⑤ 보테니컬 아트 자격증 ⑥ 보자기 아트(고품격 상품 포장법) ⑦ 프랑스 자수(야간) ⑧ 생활요리(야간)

6. 자격 및 조건

- 가. 접수일 기준 해당과목 자격증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선발
- 나. 강사활동 경력자 우대 선발

7. 제출서류

- 가. 지원신청서 1부 나. 자격증 사본
- 다. 자필이력서 1부 라. 강의계획서 1부(교육일정 참고하여 회차별 강의내용 작성)
- 마. 기타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격증 및 경력 등에 대해서는 인정불가

8. 선발방법

- 가. 서류전형(내부 서류심사 기준표에 의함, 필요시 면접)
- 나. 합격자 발표 : 2020. 1. 30. 합격자 개별 통보

9.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각 과목 수강생 10명 미만일 경우 폐강하고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
- 다. 기타 문의사항 : 고창군 여성회관(☎ 063-560-8085)

2020. 1. .

고 창 군 수

2020년 상반기 교육 과목

과정	과 목	정원 (명)	평가방법	일정 및 과정	비 고
국가자격 증취 과정	1. 한식 조리 기능사	12	국가자격 실기	주 3회(38회)3개월 09:30-12:30(3시간 수업) 재료비 250,000	월, 수, 금
	2. 중식 조리 기능사	12	국가자격 실기	주 2회(25회)3개월 13:30-16:30(3시간 수업) 재료비 200,000	수, 금
	3. 컴퓨터활용능력2급	24	국가자격	주 1회(16회)4개월 09:30-12:30(3시간 수업) 교재비 20,000	목
	4. 예쁜 옷 만들기 (양장기능사 중급반)	10	국가자격 실기	주 2회(34회)4개월 09:30-12:30(3시간 수업) 재료비 200,000원	월, 수
	5. 예쁜 옷 만들기 (양장기능사 초급반)	10	관광상품 디자인개발	주 2회(34회)4개월 14:00-17:00(3시간 수업) 재료비 200,000원	월, 수
	6. 떡제조기능사자격증 반 (우리 떡 연구)	16	국가자격 실기	주 1회(17회)4개월 09:30-12:30(3시간 수업) 재료비 200,000원	화
자격 증취 및 기술 기능 과정	7. 컴퓨터 기초반	24	컴퓨터 기초	주 2회(33회)4개월 10:00-12:00(2시간 수업)	수, 금
	8. SNS를 통한 마케팅기법 및 나만의 상품홍보하기	24	1인 미디어 기초반	주 1회(18회)4개월 14:00-17:00(3시간 수업) 교재비 60,000	월
	9. 우리이야기로그림책만들기 (그림책활동가양성과정)	20	그림책활동가 양성과정	주 1회(16회)4개월 13:30-16:30(3시간 수업) 재료비 200,000	목
	10. 손뜨개 (관광상품 연구반)	20	민간자격 실기평가 학습시간 80%이수	주 1회(18회)4개월 09:30-12:30(3시간 수업) 재료비 150,000	월
	11. 보태니컬아트 자격증	20	민간자격 실기평가 학습시간 120시간 이수	주 1회(17회)4개월 10:00-12:00(2시간 수업) 재료비 160,000	화
	12. 보자기 아트 (고품격 상품포장법)	20	민간자격	주 1회(12회)3개월 13:30-16:30(3시간 수업) 재료비 200,000	화
	13. 프랑스 자수(야간) (심화반)	20	수료	주 1회(18회)4개월 19:00-21:00(2시간 수업) 재료비 150,000	월
	14. 생활요리(야간)	12	수료	주 1회(9회)2개월 19:00-21:00(2시간 수업) 재료비 200,000	월

고창군 공고 제2020-82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3항 및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
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고 창 군 수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명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용지 1매당 80원 ○ 라벨용 명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벨용지 1매당 240원 	$(15,000\text{원} \times \text{USB 8GB 메모리 개수})$ $+ (30\text{원} \times \text{면수})$	

고창군 공고 제2020-83호

고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고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군계획조례 반영으로 군민들에게 토지이용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고창군 전반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가.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규정 반영기한 연장
(안 제60조의2제2항)
- 나. 자연취락지구 내 제조업소 입지규제 개선(안 별표22)
- 다. [별표26] 중 제1호의3), 건축물 상부 발전시설 기준 변경(안 별표26)
- 라. [별표26] 의 용어 및 문구 수정(안 별표26)

3. 의견제출

고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 : 건설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 56428,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전화 : 063-560-2564 FAX : 063-560-2579)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담당자 전제민(전

화:063-560-2564)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 . .
 제출자 : 고창군수
 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과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규정 반영기한 연장(안 제60조의2제2항)
- 나. 자연취락지구 내 제조업소 입지규제 개선(안 별표22)
- 다. [별표26] 중 제1호의3), 건축물 상부 발전시설 기준 변경(안 별표26)
- 라. [별표26] 중 제1호의4), 우량농지 내 발전시설 기준 변경(안 별표26)
- 마. 제20조의2 및 [별표26] 의 용어 및 문구 수정(안 제20조의2 안 별표26)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수반여부 : 없음
- 다. 입법예고 : 예정
- 라. 규제심사 : 예정

4. 따로붙임

-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중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 을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 으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 중 “2016년” 을 “2020년” 으로 한다.

[별표 22] 중 제2호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자목·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26]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발전시설 이격거리 등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별표 26] 중 제1호가목 내지 사목의 “이상” 을 삭제한다.

[별표 26] 중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이격거리 이내의 경우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6]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폐차장 및 고물상 이격거리 등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별표 26] 중 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이상” 을 삭제한다.

[별표 26] 중 제1호의 아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군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일단의 토지를 분할하여 동일한 목적의 건축물을 2동 이상 건축하는 것과 부지면적 3,000㎡ 이상의 토지에 동일한 목적의 건축물을 2동 이상 건축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간 건축물 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별표 26] 중 제1호의 아목 4)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우량농지 내에 발전시설(자가소비용은 제외)을 설치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발전시설¹⁾의 이격거리²⁾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가. 공원, 문화재, 관광지⁴⁾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300m 이상
- 나. 주요도로⁵⁾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300m 이상
- 다. 농어촌도로⁶⁾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200m 이상
- 라. 공공시설 등⁷⁾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300m 이상
- 마. 주거밀집지역³⁾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200m 이상
- 바. 유네스코, 지질공원⁹⁾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500m 이상
- 사. 공유수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닷가)으로부터 1,000m 이상
- 아. 위 가부터 사까지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1) (생략)
- 2) (생략)
- 3)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는 「건축법」 등

-----.

1. ----- 이격거리²⁾ 등의 -----
-----.

- 가. -----
-----300m
- 나. -----
-----300m
- 다. -----
-----200m
- 라. -----
-----300m
- 마. -----
-----200m
- 바. -----
-----500m
- 사. -----

-----1,000m
- 아. 위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이격거리 이내의 경우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1)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 3)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군계획위원회 심의

관련법령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또는 자문 대상(일단의 토지를 분할하여 동일한 목적의 건축물을 2동 이상 건축하는 것과 부지면적 3,000㎡ 이상의 토지에 동일한 목적의 건축물을 2동 이상 건축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간 건축물 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4) 우량농지⁸⁾ 내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삭 제>

<신 설>

자. 우량농지⁸⁾ 내에 발전시설(자가소비용은 제외)을 설치할 수 없다.

2. 폐차장¹⁰⁾ 및 고물상¹¹⁾의 이격거리 기준은 아래와 같다.

2. ----- 이격거리 등의 -----.

가. 공원, 문화재, 관광지⁴⁾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200m 이상

가. -----
-----200m

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200m 이상

나. -----
-----200m

다. 공공시설 등⁷⁾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500m 이상

다. -----
-----500m

라. 주거밀집지역³⁾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300m 이상

라. -----
-----300m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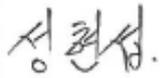
2. 미첨부 근거 규정

고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름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4. 작성자 :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장 김 경 진

예산팀장 협 조 필


건설도시과장 이 종 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 전북고창090		
정책명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고창군	
	부서명	건설도시과	
	담당자명	전제민	전화번호 063-560-256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2월 1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건설도시과)	가. 생산농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규정 반영기한 연장 (안 제60조의2제2항) 나. 자연취락지구 내 제조업소 입지규제 개선(안 별표22) 다. [별표26] 중 제1호의1)의 이격거리 50% 완화 기준 변경(안 별표26) 라. [별표26] 중 제1호의3), 건축물 상부 발전시설 기준 변경(안 별표26) 마. [별표26] 중 제1호의4), 우량농지 내 발전시설 기준 변경(안 별표26)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고창군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임채남			
(담당자/연락번호 : 전경주/063-560-2288)			
			
건설도시과장 귀하			

Ⅱ.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고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대한 규제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건설도시과 과 장 : 지방시설사무관 이종연 담 당 : 지방시설주사 김경진 작성자 : 지방시설서기 전제민							
4. 근거법령명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 기준)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건축물 상부 판매용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자	-		-		-	
	이 해 관 계 자							
6.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존속기한 설정대상 아님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강화규제내용 :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별표 26) ⇒ 건축물 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설 설치하는 경우 규제사항 마련 - 건축물 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신청일 까지 건축물 용도에 맞는 시설로 사용한 경우 에만 허용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강화 필요성

가. 문제의 내용

-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고창군계획조례)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가가 쉬운 동식물관련시설 등으로 허가 후 판매용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난개발 우려, 주민과의 마찰 발생 및 조례 무력화

나. 문제발생의 원인

-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 회피 수단으로 동·식물관련시설 설치 후 판매용 발전시설 설치하고 건축물은 그대로 방치

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판매용 발전시설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이 실제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며, 고창군계획조례를 회피할 목적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함.

라. 규제의 목표설정

- 건축물 용도에 맞도록 사용 유도 및 소득 창출 일원으로서 태양광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건축물 상부에 대한 규제로 이해관계인들의 반대가 예상됨.

나. 기술수준 및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허가기준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절성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가.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없음

나.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비규제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다.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 기존의 유사한 규제 없음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 규제의 일정기간 추진 후 상위법에 의거 지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있음

고창군 공고 제2020 - 99호

고창군 농림축수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농림축수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고 창 군 수

1. 제정이유

- 고창군에서 생산·제조·가공되는 우수 농림축수산물에 대하여 고창군이 개발한 통합브랜드를 사용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통합브랜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고창군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용어 정의 및 사용품목, 변경 등 (안 제2조 ~ 제4조)
-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5조 ~ 제10조)
-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안 제11조 ~ 제19조)
- 통합브랜드 활성화 지원 홍보 및 시행규칙 (안 제20조 ~ 제22조)

3. 의견제출

- 고창군 농림축수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농어촌식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28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063-560-2701, Fax 560-252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농어촌식품과(☎ 063-560-27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고창군 농림축수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고창군 농림축수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0. . .
 제 출 자 : 고창군수
 제안설명자 : 농어촌식품과장

1. 제정이유

- 고창군에서 생산·제조·가공되는 우수 농림축수산품에 대하여 고창군이 개발한 통합브랜드를 사용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통합브랜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고창군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나. 용어 정의 및 사용품목, 변경 등 (안 제2조 ~ 제4조)
- 다.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5조 ~ 제10조)
- 라.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안 제11조 ~ 제19조)
- 마. 통합브랜드 활성화 지원 홍보 및 시행규칙 (안 제20조 ~ 제22조)

3. 참고사항

- 가. 예산수반여부 : 예
- 나. 입법예고 : 2020. 1. . ~ 2. .(20일간)

4. 따로붙임

- 제정조례안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농림축수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생산·제조·가공되는 우수 농림축수산물에 대하여 고창군이 개발한 통합브랜드 사용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브랜드 보호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고창군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창군 농림축수산물”이란 고창군에서 집중 육성하는 특화품목의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생산물과 생산물을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 등을 말한다.
2. “고창군 농림축수산물 통합브랜드”(이하 “통합브랜드”라 한다)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고유 상표를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품목) 고창군이 개발한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고창군에서 생산·제조·가공되는 농림축수산품을 말한다.

제4조(통합브랜드 변경 등) 군수는 통합브랜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통합브랜드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농수축산경제국장

나. 농어촌식품과장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 고창군 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사무소장

바. 고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사. 고창군 농업협동조합장 대표

아. 공동출하 생산자단체 대표

자. 소비자단체

차. 홍보마케팅 및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등

4. 위원회 내에 기술자문이 가능한 품목별 전문위원(각 2명 이내)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5조제3항가목부터 마목까지는 그 직책에 있는 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통합브랜드 사용 및 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2. 통합브랜드 사용허가 품목선정에 관한 사항
- 3. 통합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 4. 통합브랜드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5. 통합브랜드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 사례 수집 및 개선 요구 사항
- 7. 그 밖의 통합브랜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수당지급) 위원회 참석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요구하거나 과반수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창군 관내 거주자로서 품질관리 및 생산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우수한 품목에 한한다.

1. 공인기관의 농림축수산물 품평회 등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품목
2. 전문 연구기관 등 관련 공인 기관의 추천 및 인증을 받은 품목
3. 그 밖에 군수가 고창군의 우수 농림축수산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브랜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③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신청방법,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품목은 품목별 담당부서의 자체 심의회를 구성 심의후 제3항에 따라 신청하도록 한다.

제12조(사용허가 및 유효기간)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검토와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합브랜드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통합브랜드 사용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며 사용기간 내에 흠이 없을 시에는 상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연장)서를 교부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상표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계약) ①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계에 따라 계약한다.

제14조(포장재 사용신청) ① 통합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군수

에게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통합브랜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장재 표시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용자의 책임) ①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통합브랜드 사용자는 통합브랜드 사용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과 사용 정지 및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기준 위반한 자의 제재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는 농림축수산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품목별 관리부서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총괄담당부서인 농어촌식품과에 보고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② 품목별 담당공무원 및 관리위원은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브랜드의 사용 생산품이 변질·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리콜조치를 하도록 한다.

④ 군수는 통합브랜드 사용허가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통합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통합브랜드 승인품목에 대한 담당부서에서는 자체 세부규칙 등을 제정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정지) 군수는 통합브랜드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브랜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품목의 품위가 일부 손상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품목을 1년 이상 생산·판매하지 않은 경우

3. 통합브랜드 사용허가 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한 관련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사용허가 취소) ① 군수는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통합브랜드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품목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사용허가자가 허가받지 않은 품목에 통합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4. 제17조의 통합브랜드 사용허가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5.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품목이 정지 및 취소당한 경우
6.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7. 전업·폐업 등으로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8. 제16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 및 관리위원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5조제3항에 따른 제재기준에 해당할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승인을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미 통합브랜드가 제작·유인된 포장재 및 홍보물 등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 ① 통합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에게 연간매출액의 일부를 사용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의 주요 농림축수산물으로써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경우

2. 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3. 군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농림축산어업인이 직접 조직·운영하는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목적이나 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할 경우

제20조(통합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홍보) ① 군수는 통합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통합브랜드 사용자에게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브랜드의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통합브랜드 사용에 대한 지원 및 교육, 홍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통합브랜드 품질관리운영 종합계획서

1. 신청인내역

- 가. 성명(사업자명) :
- 나.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 다. 주 소 :
- 라. 연 락 처 :

2. 사업내역(관련자료 첨부)

- 가. 신청품목 :
- 나. 사업장소재지 :
- 다. 사업규모 :
- 라. 사업시설현황 :
- 마. 연간총생산량 :
- 바. 재배면적 : 내역첨부
- 사. 경작농가수 : 내역첨부

아. 자본금 : 등기부등본 기재사항 참조

자. 연간매출액 :

차. 연간출하량 :

카. 규격 및 단가 :

타. 수출실적 :

파. 주 판매처 :

하. 인증사항 : 사본첨부

3. 재배배경

- 세부적으로 기재

4. 재배현황

가. 재배면적 :

나. 영농자 수 :

5. 재배방법

- 세부적으로 기재

6. 사업추진성과(관련자료 첨부)

가. 각종 지원사항 :

나. 매출실적 :

다. 유통망 확보사항 :

라. 입상경력 :

7. 향후 발전계획(세부적으로 작성)

가. 관련시설 :

나. 기술능력 :

다. 육성의지 :

라. 생산 및 판매상황 :

마. 유통 및 소비상황 :

바. 기타사항 :

8. 특이사항

- 필요시 기재

9. 기대효과

-

【별지 제2호 서식】

고창군 통합브랜드 사용 허가대장

일련 번호	허가 번호	사용권자			내용			비고
		성 명 (조직및대표)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상품목	허가물량	사용기간	

【별지 제3호 서식】

고창군 통합브랜드 사용 허가(연장)서

승인번호 : 제2020 - 호

생산자	성 명 (생산자,단체)		재배품목	
	농 가 수		재배면적	
사용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업장소재지			
허가 (연장) 내용	사용권		허가품목	
	출하량(년간)		포장단위	
	유효기간			

고창군 통합브랜드 관리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허가(연장)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별지 제4호 서식]

고창군 통합브랜드 사용계약서

- 1. 허가대상자 :
- 2. 사용품목 :
- 3. 사용물량 :
- 4. 유효기간 :

상기 사항에 대하여 고창군 통합브랜드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사용자 : (서명 또는 인)

허가자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수 (인)

[별지 제6호 서식]

고창군 통합브랜드 사후관리대장					
성 명 (조직명)		조 직 대 표 자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허가품목			전화번호		
허가물량		브 랜 드 제 작	표시방법		
			제 작 처		

사 용 연월일	생 산 량		출 하 상 황		상 품 상 황			상 표 사 용 (포 장 재, 스티커 등)			확 인		
	품목명	물 량	물 량	출하처	당도	선별 정도	기타	제작량	사 용 량		재고량	사용자	확인자
									사 용	파손			

- 주) 1. 표시방법은 포장재 또는 스티커 기재
 2. 사용자는 관리일지를 기록하고, 책임부서에서는 반기 1회이상 정기확인 실시

【별지 제7호 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성명 (대표자)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조 직 명 :
- 주 소 :
- 신 청 품 목 :

위 본인은 고창군 통합브랜드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겠음을 서약하고자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통합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2.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며
3. 통합브랜드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통합브랜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

고창군 공고 제2020-101호

고창군 농림축수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고창군 농림축수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고 창 군 수

1. 제정이유

- 고창군 농림축수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통합브랜드 사용허가 신청,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행규칙의 목적(안 제1조)
-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기준 위반 제재 등(안 제2조 ~ 제5조)
- 사후관리 및 사용료(안 제6 ~ 제7조)
- 통합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홍보(안 제8조)

3. 의견제출

○ 고창군 농림축수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농어촌식품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28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063-560-2701, Fax 560-252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농어촌식품과(☎ 063-560-27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창군 농림축수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고창군 농림축수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 . .
 제출자 : 고창군수
 제안설명자 : 농어촌식품과장

1. 제정이유

- 고창군 농림축수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통합 브랜드 사용허가 신청,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행규칙의 목적(안 제1조)
- 나.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기준 위반 제재 등(안 제2조 ~ 제5조)
- 다. 사후관리 및 사용료(안 제6 ~ 제7조)
- 라. 통합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홍보(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예산수반여부 : 예
- 나. 입법예고 : 2020. 1. . ~ 1. . (20일간)

4. 따로붙임

- 시행규칙 제정안

고창군 시행규칙 제2020-101호

고창군 농림축수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농림축수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고창군 통합브랜드 사용허가 신청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및 심사기준) ① “고창군 농림축수산물 통합브랜드”(이하 “통합브랜드”라 한다) 사용허가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허가신청서와 품목별 관리부서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상품목은 사업목적이 뚜렷하고 고창군 농업발전 전략품목이어야 한다.

③ 대상품목은 연간 판매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④ 대상품목은 품질의 특성과 매뉴얼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⑤ 대상품목은 최근 2년 이상 생산, 가공, 판매실적이 있어야 한다.

⑥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품목 관리부서에서 자체 심사하여 제출한 대상품목 중 “별지 제1호 서식” 사용심사기준표에 따라 60점 이상 평가받은 품목에 대해서 통합브랜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⑦ 제2조제6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림축수산물의 관리 부실에 의한 유통시 통합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품목부서에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기간 연장) ① 통합브랜드 사용허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연장 신청서와 품목별 관리부서의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간 연장은 허가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간 연장허가는 제2조에 따라 심사 결정하여 허가한다.

제4조(포장재 표시방법 등) ① 통합브랜드 사용은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통합브랜드의 크기, 표시방법 등은 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고 통합브랜드의 색상은 포장지의 색상에 따라 매뉴얼에서 정한 색상 규정에 맞게 변형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용기준 위반 제재) 통합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통합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① 통합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연 1회 대상품목에 대한 사용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품목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상품목 출하실적 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품목 관리부서는 통합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제18조를 위반했는지를 수시 점검하여 위반 시 시정조치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① 군수는 통합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간매출액의 1,000분의 10 이하를 사용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용료 납부시기는 사용계약 연도의 말일에 납부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통합브랜드 사용료 고지서로 시중은행에 납부한다.

③ 사용계약 체결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용료는 고창군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8조(통합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홍보) ① 군수는 우수 농림축수산품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해 통합브랜드 사용자에게 필

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전시 및 판매 행사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합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해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통합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합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고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시정명령	표시정지3월	허가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	〃	〃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	〃	〃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	〃	〃
(5)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1월	〃	〃
(6)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정명령	〃	〃
(7)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고창산 농림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정지3월	표시정지6월	〃
(8)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	〃
(9)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시정지3월	표시정지6월	〃
(10)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	〃	〃

행 정 처 분 대 상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1)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	시정명령	표시정지3월	〃
(12)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	표시정지3월	허가취소	
(13)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	〃	
(14)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	〃	
(15)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	〃	
(16)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시정지3월	표시정지6월	허가취소
(17)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	허가취소	
(18)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취소		
(19)소비자 고발과 행정,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시	표시정지3월	허가취소	

[별지 제1호 서식]

사 용 심 사 기 준 표

구 분	항 목	심사기준	배점	평가 점수
일반사항 (34점)	① 대상품목 생산경력	. 5년 이상 생산. 가공. 판매 경력(7) . 2~5년 미만 생산. 가공. 판매 경력(5) . 2년 생산. 가공. 판매 경력(3)	7	
	② 조례 제9조 허가요건여부	. 허가요건 4가지이상 요건구비 (10) . 허가요건 3가지 요건구비 (8) . 허가요건 2가지 요건구비 (6) . 허가요건 1가지 요건구비 (4)	10	
	③ 대상품목 전채량 중 고창산 비율	. 대상품목의 고창산 100% 생산, 가공품 (10점) . 대상품목의 고창산 80% 생산, 가공품 (5점) . 대상품목의 고창산 50% 생산, 가공품 (2점)	10	
	④ 품목의 재배(사육) 가공 방법	. 농가계약 재배(사육), 가공 (7점) . 계약 없이 농가에서 무작위 재배(사육) (5점) . 농가에서 일부 재배(사육) + 중·도매 구매, 가공 (2점)	7	
품목의 상품화 정 도 (22점)	⑤ 고창군 선별품목 육성 가치	. 전략품목 가치가 높음 (6점) . 전략품목 가치가 보통 (4점) . 전략품목 가치가 낮음 (2점)	6	
	⑥ 생산규모 및 매출액 규모	. 품목의 판매실적 15억 이상 (10점) . 품목의 판매실적 10억 이상 (7점) . 품목의 판매실적 5억 이상 (3점)	10	
	⑦ 품목의 규격화 정도	. 상품의 규격화, 포장화 유통 양호 (6점) . 상품의 규격화, 포장화 유통 보통 (4점) . 상품의 규격화, 포장화 유통 미흡 (2점)	6	
품질관리 상 태 (35점)	⑧ 생산·가공 매뉴얼 유무	. 매뉴얼에 따른 생산, 가공의 체계적 관리 양호 (7점) . 매뉴얼은 있으나 체계적 관리 미흡 (5점) . 생산, 가공 매뉴얼 없음 (3점)	7	
	⑨ 생산, 출하 품질관리 상태	. 품질관리 기록관리 양호 (6점) . 품질관리 기록관리 미흡 (4점) . 품질관리 없음 (2점)	6	
	⑩ 대상품목 출하 관리수준	. 품질 관리사가 있고 선별 등 품질관리 체계적임 (10점) . 품질관리사가 없으며 일부시설을 갖추고 품질관리 (7점) . 자체품질관리사가 없고 선별 등 자체관리가 미흡 (5점)	10	
	⑪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여부	. 식품위해요소 해소를 위한 친환경인증 및 GAP인증 획득 등 필요한 위해물질 검사 실시 (7점) ※축산물의 경우 법정전염병 및 식육잔류물질 등 검사 여부 . 인증서 획득 없이 위해물질 검사 (5점)	7	
	⑫ 생산, 가공시설의 위생청결 상태	. 생산, 가공시설의 위생청결 양호 (5점) . 생산, 가공시설의 위생청결 보통 (3점) . 생산, 가공시설의 위생청결 미흡 (1점)	5	
상품유통 (9점)	⑬ 리콜규정	. 자체 리콜규정 유 (3점) . 자체 리콜규정 무 (1점)	3	
	⑭ 유통지역	. 고창군이외의 지역에 100%판매 (6점) . 고창군이외의 지역에 60%이상 판매 (4점) . 고창군이외의 지역에 60%미만 판매 (2점)	6	
점수			100	

[별지 제2호 서식]

사용 실적 보고서

 운영개요

- 대상품목 :
- 허가기간 :
- 시설현황 :
- 허가품목의 특징 :

 생산 및 판매실적

- 생산실적

단위 : 톤

구 분	생 산 량					비 고
	계	고 창 관 내			기 타 (타 지역)	
		소 계	계약재배	기 타		
톤						
비율(%)						

- 판매실적

단위 : 톤 / 천원

구 분	판 매 실 적			비 고
	계	관 내	관 외	
판매량				
금 액				

 부서의견

고창군 공고 제 2020-112호

2020년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추진계획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보급 및 어선의 안전·복지 등을 위한 장비지원으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을 통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희망자를 모집공고 하오니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20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나. 근거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어업선진화 사업의 추진) 및 제17조 (선진화사업에 대한 지원)

- 「수산업법 제86조 (보조 등)

다.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라. 사업비 : 35,700천원 (국비 10,710 도비 3,213 군비 7,497 자담 14,280)

마. 사업량

(단위 : 대, 천원)

구분	사업량	계	국비(30%)	도비(9%)	군비(21%)	자담(40%)
어선 기관·장비·설비	8척	35,700	10,710	3,213	7,497	14,280

※ 사업자 신청에 따라 사업량 변동 가능

바. 사업내용

- 저효율 기관·장비·설비 대체 및 어선의 안전·복지등을 위한 장비 또는 설비 지원

2.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 어선의 기관·장비·설비를 대체(또는 설치)를 하고자 하거나 어선의 안전·복지 등을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어업인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어선

3. 지원대상

가.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

나.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다. 저효율(육상기관 포함)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

※ 총톤수 2톤 미만 소형어선으로 150마력이하 가솔린기관을 포함하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은 제외

라. 어선의 안전·복지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설비

4. 우선순위 및 제외 대상

가. 우선순위

[LED등 사업자 선정]

- LED집어등 설치어업인을 우선으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우선순위에서는 소형어선 어업인(수협위판 실적이 있어야 함), 어업인 후계자 순으로 함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어선

[기관·장비·설비사업 사업자선정]

- 다음 순위로 선정하되,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대체 신청자, 소형어선 어업인(수협위판 실적이 있어야 함),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1) 유류절감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신청자가 있을 경우 최우선 지원)

2) 육상용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 하고자 하는 자

3)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4)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해상용 디젤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5) 노후장비·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

6) 법령으로 설치가 의무화 된 노후장비·설비를 희망하는 자

7) 새로운 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8) 가솔린 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 단 1)~7)순위 보다 우선지원 불가하며 전체 보조금의 30%를 넘을 수 없음

※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 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 수협위판 실적이 있는 소형어선 어업인,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어선 총톤수가 작은 어업인 순으로 함

※ 대체기관의 단종 등 부득이한 경우 상위 마력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허용범위는 10% 이하로 한다.

나. 지원제외 대상

- 1)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과징금 처분이상)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2)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은 자
- 3)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에 따른 계선계 제출한 어선
- 4)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
- 5)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단 LED등을 설치한 자는 지원 가능
- 6)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

5. 사업자 선정 및 집행 절차

가. 사업 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

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당해년도 사업에만 적용)

다. 사업자 선정 완료 후 사업자 명단, 지원금액 등 공동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역 수협 조합장에게 통보

라. 사업자는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해당 지역별 수협 조합장에게 신청하여 해당 어선에 설치

※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 체결 제품 구입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에서 어업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별도 구매계약 체결 가능

※ 수협은 사업자별 장비조달업무(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등 보조업무 수행하고, 사업자에게 사업전반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함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01. 23 ~ 02. 12. (13일간)

나.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다. 접 수 처 :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7. 기타사항

가. 사업별 지원한도액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 구매가액(설치비 포함

한다)의 보조지원율로 지원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560-26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고 창 군 수

【공통 제1호서식】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보급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단 체 등 의 명 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주 소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과)	졸업 중퇴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어선명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총톤수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어선번호					
	선적항					
용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	지방비 (%)	자부담 (%)	
사업내용별 규모 (품명, 규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div>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주) 1) 사업계획서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공통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 (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고창군 공고 제2020 - 115호

고창군 복분자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창군 복분자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고 창 군 수

1. 제정이유

- 고창군 복분자유원지의 조성 목적에 부응하고 활성화를 위해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4조)
- 나. 유원지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10조)
- 다. 복분자 유원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6조)
- 라.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안 제18조)
- 마. 수탁 위탁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안 제20조)
- 바. 수탁자의 의무 및 협약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안 제22조)
- 사.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안 제2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상생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0. 1. 23.~ 2020. 2. 3.(11일간)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하는 곳

- (우) 56428/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기업유치팀
(☎ 063-560-2354, Fax 560-2369)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063-560-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고창군 복분자 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고창군 복분자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0. 1. .
 제 출 자 : 고창군수
 제안설명자 : 상생경제과장

1. 제정이유

- 고창군 복분자유원지의 조성 목적에 부응하고 활성화를 위해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4조)
- 나. 유원지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10조)
- 다. 복분자 유원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6조)
- 라.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안 제18조)
- 마. 수탁 위탁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안 제20조)
- 바. 수탁자의 의무 및 협약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안 제22조)
- 사.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안 제2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나. 예산수반여부 :
- 다. 입법예고 :
- 라. 규제심사 :

4. 따로붙임

- 제정조례안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복분자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복분자유원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창군 부안면 유원지의 명칭은 “고창군 복분자유원지(이하 “유원지”라 한다)”라 한다.
2. “시설이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유원지” 내 건축물과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유원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유원지 시설”이라 함은 고창군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고시에 따른 유희시설, 휴양시설(캠핑장), 특수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기타 시설, 녹지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위치) 유원지는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9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사업)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원지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2. 유원지 자료 및 정보의 수집·홍보
3. 유원지 관련 사업의 발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운영관리

제5조(운영방법) 유원지 및 시설은 고창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유원지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또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부지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2. 부지와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3. 수탁대상 :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기업, 개인 등

제6조(개관 및 휴관) 유원지 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년 1월 1일, 설, 추석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제7조(이용 및 관람시간) ① 유원지 이용 및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유원지 운영상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 ① 유원지 안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퍼센트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

2.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자
나.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30퍼센트 감면

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분증을 소지한 자

- ③ 유원지 이용료는 복분자 유원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위·수탁 협약체결 후에는 협약내용을 따른다.
- ④ 군수는 유원지 시설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유원지 시설 이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② 캠핑장 이용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캠핑장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1조(복분자 유원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유원지 시설 및 연관 사업의 유지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복분자 유원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생명지원과장, 농어촌식품과장, 해양수산과장, 상생경제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이 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 추천 의원 1명
2. 유원지 및 농생명식품산업, 문화, 관광, 클러스터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유원지의 시설 취득·처분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시설 이용료 등 유원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원지의 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서 심의 또는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출석위원의 직업 또는 친·인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위원은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5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제12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유원지 관리·운영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 한다.

② 유원지 운영을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유원지 운영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유원지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등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협약체결)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 재산, 기간,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3. 위탁료, 사용료, 운영비 및 필요한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

제19조(수탁 위탁료 및 사용료) ①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연마다 위탁료 또는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연간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 등의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시설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0조(사용료 감면 및 조정) ①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복분자 유원지 운영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복분자 유원지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 또는 위탁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수탁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사용허가 포함)운영이 만료 또는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유원지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3장 유지관리 및 보수

제23조(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6조 제1항에 따라 협약 취소된 경우에는 이용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부지 포함)의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 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계장비의 파손, 고장 등의 수리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제24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원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다.

1. 복분자유원지 시설 관리 현황
2. 복분자유원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5조(준용) 유원지 운영·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창 복분자유원지 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시설명 :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기준 (면적)	성수기 (7~8월)	비수기		비 고
			주말, 공휴일	평일	
펜션 동	8명(118.94㎡)	200,000	140,000	120,000	
	4명(48.50㎡)	120,000	90,000	60,000	
캐라반	4명	120,000	90,000	60,000	
	6명	160,000	120,000	90,000	
오토 캠핑장	대형(10명이상)	15,000	10,000	10,000	
	소형(10명이하)	10,000	7,000	7,000	
운동장 (족구장)	1회당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시간 기준, 1시간 초과 시마다 100분의 20가산 • 행사용에 한정함

- * 비수기 평일에 단체 및 장기 체류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이후 1일 사용료 추가)
- *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100분의 50 감면
- * 고창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시 오토캠핑장 및 운동장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
- *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

〈시설명 : 황토전시체험관〉

(단위 : 원)

구 분	이용료	비 고
성 인	8,000	
어린이	5,000	

[별표 2]

캠핑장 사용자 수칙(제9조 제2항 관련)

이 곳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에서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사용자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 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 동 차

-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디밭의 차량 진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 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허가된 야간오락 장소에서도 23:00부터 07:00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7. 동 물

-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 캠핑장에서는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 캠프장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캠프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흥 보

- 캠프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흥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흥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

고창군 복분자유원지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내 용	반 환 기 준		비 고
숙박동, 캐라반, 오토캠핑장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반환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반환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50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 또는 당일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20 반환	
숙박동, 캐라반, 오토캠핑장, 운동장	예약·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별지 제1호 서식]

고창군 복분자유원지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개인 또는 단체(법인)명		등록번호(사업자, 법인 등)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요사업내용			
	소유재산	동산	부동산	기타
		억원	억원	억원
직원수				

고창군 복분자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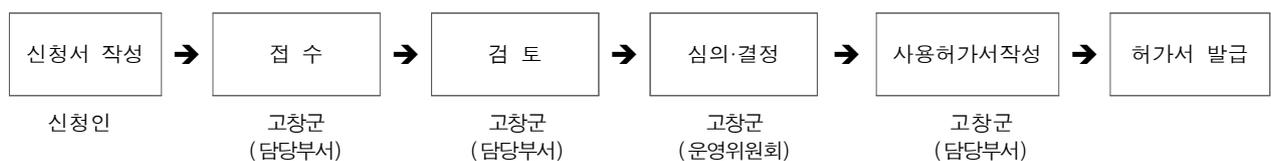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없음
------	--	----

처리절차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고창군 복분자 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창군 복분자 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 하			

고창군 공고 제2020 - 2호

고창군 무장면 육아 휴직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고창군 무장면사무소 육아휴직 대체인력(기간제 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합니다.

2020년 01월 일

1. 선발 예정인원: 1명
2. 담당업무: 산업경제팀 업무 보조
3. 채용기간 : 2020. 01. ~ 2020. 12. ※ 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보 수 액
 - 1일 68,720원(2020년 최저시급 8,590원)
 - 유급휴일수당 지급(주 5일 결근 없이 근무 시)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5. 응시자격
 - 고창군 기간제근로자 취업관리규정에 의거 채용관련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만 18세이상 만60세이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창군인 자
 - 워드프로세서 및 엑셀 사용 가능자 우대
6. 근로조건
 - 채용구분 : 기간제근로자
 -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5일(40시간) 근무

7.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0.01.14.(화) ~ 2020.01.16.(목) 09:00 ~ 18:00
- 접수장소 : 무장면사무소(총무팀 ☎ 560-8211)본인 방문 접수

8. 선발방법

- 서류심사
- 면접심사(면접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 일정 통보)
※ 1명만 서류를 제출한 경우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서류심사로 채용함

9.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및 응시원서 1부
- 경력 및 자격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10. 응시자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 수정 불가)
- 지원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심사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만 개별통보

표준 이력서(안)

<필수항목>

지원자 성명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요 경력사항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자격증 및 특기사항	관련 자격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등급	장애인 등록번호	
저소득층 여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해당여부			

응시원서

[휴직자 등 대체인력 기간제 채용]



접수번호	2020 -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관 련 자격증			
주 요 경 력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경력 및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무장면장 귀하

